

배포 일시	2022. 6. 13.(월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 박진홍 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 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: 6월 13일 10시 기준 상황

### □ 국토교통부 - 화물연대 대화

-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6월12일 물류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
-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계획

### □ 화물연대 동향

- 금일은 총 6,60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분산하여 집회 중으로, 화물연대 조합원(2.2만명)의 약 30%가 참여 예정
  - 8시30분 경 평택항에서 운송방을 방해하고 경찰을 밀치는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검거됨
- 6월12일 국토부와의 대화 중단에 따라 보다 강력한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언론 브리핑 실시

## □ 항만 등 주요 물류 동향

- 장치율(72.2%)은 평시(65.8%)보다 다소 높으며, 부산항,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있어 평시대비 반출입량은 30~40% 수준
- 철강, 타이어, 시멘트,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, 생산 중단이 점차 가시화
  - 특히 시멘트의 경우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하여, 일부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

## □ 주요 조치사항

-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,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
  -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,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,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

**참고 1**

**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및 일일 반출입 현황(6.13 10시 기준)**

(단위 : TEU, %)

구분	화물 장치율						일일 반출입량						
	장치능력 (A)	장치량		장치율(%)			전일 17시- 금일 10시 반입 (C)	전일 17시- 금일 10시 반출 (D)	반출입 (C+D)	전일 반출입 (E)	평시('22.5월 동시간대) 반출입량		
		금일 10시 (B)	전일 (10시)	금일 10시 (B/A)	전일 (10시)	평시 '22. 5월					반입	반출	합계
부산항	592,335	468,382	462,455	79.1	78.1	70	6,202	5,958	<b>12,160</b>	8,844	13,961	16,388	30,349
인천항	112,921	94,034	93,607	<b>83.3</b>	82.9	79.1	248	502	<b>750</b>	249	<b>2,119</b>	<b>2,929</b>	<b>5,048</b>
광양항	110,856	66,059	65,715	<b>59.6</b>	59.3	61.0	0	0	<b>0</b>	0	1,457	1,549	3,006
평택 당진항	39,520	27,077	27,161	<b>68.5</b>	68.7	57.7	0	0	<b>0</b>	112	685	928	1,612
울산항	29,464	16,149	16,062	<b>54.8</b>	54.5	55.6	0	0	<b>0</b>	0	259	229	488
군산항	8,006	1,366	1,363	<b>17.1</b>	17.0	21	110	65	<b>175</b>	70	56	81	137
마산항	3,700	596	593	<b>16.1</b>	16.0	29.7	5	2	<b>7</b>	4	50	66	116
대산항	8,255	2,333	2,333	<b>28.2</b>	28.2	28.4	0	0	<b>0</b>	0	110	139	249
포항항	24,041	2,666	2,666	<b>11.1</b>	11.1	11.7	0	0	<b>0</b>	0	25	25	50
동해항	1,150	120	120	<b>10.4</b>	10.4	18.0	0	0	<b>0</b>	0	24	24	48
목포항	7,902	338.8	362	<b>4.5</b>	4.8	4.5	16	24.8	<b>40.8</b>	48	105	161	266
경인항	3,252	766	770	<b>24.0</b>	24.0	26.0	10	25	<b>35</b>	0	51	52	103
<b>계</b>	<b>941,402</b>	<b>679,887</b>	<b>673,207</b>	<b>72.2</b>	<b>71.5</b>	<b>65.8</b>	<b>6,591</b>	<b>6,577</b>	<b>13,168</b>	<b>9,327</b>	<b>18,902</b>	<b>22,571</b>	<b>41,472</b>

## 참고 2

##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·환불 계획

### □ 통행료 면제

- (면제기간) '22. 6. 7(화) 00:00 ~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
- (면제구간) 고속도로 **소구간** (민자고속도로 포함)
- (대상차량) 국토부 지정 **대체수송차량**(10톤 이상 견인차,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)으로 **식별표지** 및 **통행료 면제확인증**을 발급받은 차량
- (면제방법) **하이패스**는 정상 납부 후 **사후 환불**  
\* (선불카드) 사후 충전, (후불카드) 카드사 미청구  
**일반차로**는 **즉시 면제** (식별표지 부착, 면제확인증 제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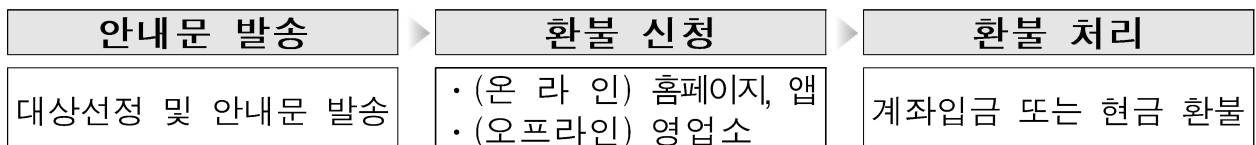
※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**식별표지**를 부착하고, **통행료 면제 확인증**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

### □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

- (발급장소)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**소 영업소** (367개소)
- (발급시간) **09:00 ~ 18:00** (주말·공휴일 포함)
- (발급방법) **자동차등록증** 및 **신분증** 지참 영업소(사무실) 방문  
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(전산등록·출력)

### □ 통행료 환불

- (환불대상)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
\*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
- (환불시기)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
- (환불절차)



### □ 문의처 :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

### 참고 3

##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보상 지침

### I. 목적

-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시 非화물연대 운행 차량 및 운송복귀차량 (이하 “운행참여차량”이하 한다)에 대한 운송방해행위로 불안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피하여 화물수송 차질 초래
-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(자기차량손해보험·공제 미가입 차량만 해당)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려는 것임

\* 관련근거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호(재정지원)

### II.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

#### □ 대상 차량

- 화물연대의 전국적 또는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 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·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
-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제외

#### 【 화물자동차 피해발생 유형(예시) 】

- 운행 및 주차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, 후미 등을 파손
- 주차중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
- 피견인차량(트레일러)의 제동장치(공기호스 등) 절단
- 도로에 못 등을 뿌려 타이어 파손
- 주차중인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분사
-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방화
-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 주입
-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·부당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

## 보상 대상 피해 기간

- 집단운송거부 발생 ~ 상황 종료시 원칙

\* 다만, 집단운송거부前 발생 건이더라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(경찰 확인)에는 지원 추진

## 보상 금액

- 시·군·구의 “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”(공무원, 손해사정인,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구성)에서 요청한 보상금액 지급

## Ⅲ. 보상 절차

###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 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

- 피해신고시 피해내역, 추정수리비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

###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

- 제출서류 : 사건사고사실확인원, 자동차등록증, 화물운송계약서(또는 화주확인서), 수리내역서, 사진 등 증빙서류

### 시·군·구별로 「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」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

\* 공무원·손해사정인·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·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

### 피해보상금은 시·군·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로 지급

## 참고 4

##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지침

### □ 목적

- 이 지침은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### □ 업무처리 기준

- (대상)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(카고트럭)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(트랙터)

- (허가기간) 신청일과 별개로 7일('22.6.7~6.13)간 임시허가를 부여\* 하되, 집단운송 거부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7일마다 자동 연장됨

\* 허가기간 : 1차시기(6.7~6.13), 2차시기(6.14~6.20), 3차시기(6.21~6.27)

- (허가신청 기간) '22.5.30. 09시 ~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

- (처리방법)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(시·군·구)에서 접수·처리

#### ☞ 자동차가 접수관청의 관할이 아닌 경우

- 신청서를 접수 한 관청은 관할관청에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  
⇒ 관할관청은 즉시 유상운송허가증을 발급하여 접수관청으로 송부 ⇒ 접수관청은 팩스로 송부받은 유상운송허가증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

## □ 업무처리 절차

- ① (허가신청)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
- ② (접수·검토) 접수관청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, 신청 내용과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정보를 확인 후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즉시 발급
- ③ (허가증 부착) 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

### <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절차 >

